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

■ 연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21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 연태영의원 대표발의(220302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안 제32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51조제1항제10호·제10호의2)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5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9
1) 국토교통부	9
2) 통합물류협회	9
3)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13
4) 택배노조	13
2. 개선명령 및 권고 사항으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추가(안 제39조제3호의3 신설)	15
가. 개정안의 내용	15
나. 검토의견	16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8
1) 국토교통부	18
2) 통합물류협회	18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220302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염태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21.
3. 회 부 일 : 2024.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어야 함.

그런데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할 뿐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을 대상으로 위탁구역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해져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일을 잃게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현행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제11조에서 규율하는 계약해지 시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우회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제3호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안 제32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51조제1항제10호·제10호의2)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표준계약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u>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u>	제32조(표준계약서) ① ----- ----- ----- ----- ----- <u>작성하고 보급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8. (생략)	②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상호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위탁 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영업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표준계약서를----- -----소화물대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 -----.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의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9. (현행 제8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의3. (생략) <u><신설></u> <u><신설></u> 10. ~ 14. (생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 ----- -----. 1. ~ 9의3. (현행과 같음) 10.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명시하지 아니한 자 11. ~ 15. (현행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일부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인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고 위탁 구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지연배송 등을 이유로 그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제도를 운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여러 국회 토론회¹⁾에서 영업점과 계약한 택배서비스

종사자는 배송마감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동 제도로 인하여 사실상 해고될 수 있는 고용불안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일부 기사²⁾에서는 동 제도를 택배서비스종사자 과로의 원인으로 지적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계약서 또는 그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위탁구역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안정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동법의 목적³⁾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 택배 사회적 합의의 평가와 쿠팡CLS의 참여에 대한 국회 토론회(2023.9.6.),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2024.8.14.)

2) KBS뉴스, 새벽 5시 24분,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로켓배송’ 기사의 죽음, 2024.7.4.

“■ 유족·대책위, ‘구조적 문제’ 지적...쿠팡CLS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정 씨가 이처럼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된 데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게 유족과 대책위 측 주장입니다. ... (중 략) ... 또, 배송 마감시간 정책을 운영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던 미스(Done-Miss)’로 분류해 이른바 ‘클렌징’, 배송 구역 회수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던 미스 ‘0.5% 이상’일 경우 구역을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택배기사들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월간노동법률, 반복되는 ‘쿠팡 과로사’ 의혹...“사회적 합의 무시·생활물류법 위반이 원인”, 2024.7.3.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4&in_cate2=0&gopage=1&bi_pidx=36862

“서비스연맹은 정 씨의 과로사 배경에 쿠팡의 ‘클렌징’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클렌징이란 쿠팡이 하청 택배 대리점에게 배송률 미달 등을 이유로 지역의 택배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고인이 ‘개처럼 뛰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일을 바쁘게 해야 했던 이유는 클렌징에 있다”며 “쿠팡과 영업점의 계약서상 배송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한 물량이 0.5%가 넘으면 영업점이 클렌징당해 배송기사도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클렌징을 무기로 과로를 유발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영업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일 뿐 배송기사 해고와는 무관하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쿠팡의 클렌징이 개선되지 않으면 배송기사들의 과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안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상호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종류와 관계 없이 표준계약서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택배서비스종사자 간의 계약에는 위탁계약뿐만 아니라 근로계약도 존재⁴⁾하는바, 그 대상을 위탁계약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예정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가 무엇인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라는 표현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상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나, 동법 시행령에서도 어떠한 계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생략)

약서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인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탁구역의 명시 등 대통령령에서 그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등록기준
3. 장비 등	다.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u>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u> 를 갖추고 있을 것

한편, 안 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는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않는 등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현행법5)에 따르는 경우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①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제2조제1항 관련)

에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택배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에 동의하나, 사업자의 경영상 자유 등을 고려할 때 표준계약서를 일괄로 의무화하기는 어려우므로,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신설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사업자 등록 취소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도 이미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한편, 위탁계약서에 위탁구역 명시를 의무화하는 등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통합물류협회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구 분	등록기준
3. 장비 등	다.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 32조에 따른 <u>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u> 를 갖추고 있을 것

의무화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를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과잉금지의 원칙과 민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위탁구역의 명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택배사별 운영방식이 상이하고 위탁화물 규모에 따라 위탁 구역의 범위도 달라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행 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현행법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이미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춘 뒤 등록하고 있고, 매년 국토교통부 택배서비스평가를 통해 기사 근무여건 등 기사 처우수준을 평가받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과 ‘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관련 개선명령 및 권고가 가능함.

안 제32조제4항의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만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동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본 목적을 두고 있는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생활물류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협회 내 소수의견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나 종사자의 보호 및 고용 안정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사용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표준계약서 사용 및 위탁기준 명시 불이행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볼 소지가 있으나,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간 피해 방지 차원에서 위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위반에 한하여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기존 택배사의 경우 위수탁계약서에 위탁구역을 이미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 없음.

4) 택배노조

동 개정안은 유의미한 안으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

다만, 쿠팡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동참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

하는 과로사 문제(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야간 노동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음.

쿠팡의 배송시스템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있어 분류작업, 다회전 배송, 클렌징 제도 완전 폐지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고, 야간노동에 대해 완전 폐지는 어렵더라도 공적 논의를 위한 논의기구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개선명령 및 권고 사항으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추가(안 제39조제3호의3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 중 하나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 ----- ----- ----- ----- ----- ---
1. ~ 3의2. (생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u>3의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위탁 계약 또는 근로계약 관련 권리의 보호 등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u>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⁶⁾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6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60일 이상의 유예기간 및 2회 이상의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① 택배서비스사업자(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총 계약기간(최초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갱신하려는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년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총 계약기간 6년을 초과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지위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종사자 간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서면 통지 등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제도 등으로 인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고용불안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등 현행법 상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개선명령 내용이 다소 모호하므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권리 보호 조치로 이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내용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의 마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개선 등 현행법령⁷⁾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권고 사항에 비하여 모호한

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2.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3.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에 대한 관리
- 3의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의 마련
4. 서비스약관의 변경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개정안이 제안된 취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11조에 한정된 권리 보호 조치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개선명령 또는 권고 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개선명령 내용이 다소 모호한 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운송 위탁계약 관련 권리 보호 조치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통합물류협회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9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과 ‘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관련 개선명령 및 권고가 이미 가능함.

문 의 처
02)6788-5580